

# 하도급계약에 관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①

자료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 1. 공동도급공사에 있어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은 하도급계약의 효력

**Q** 가. 2개 업체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에서 1개의 업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원사업자인 공동도급사 전원이 계약서에 날인해야 하는지 여부

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는 내용에 따라 1개의 원사업자가 하도급 할 때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도 하도급업체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는지 여부

**A** 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용하는 하도급법에는 공동도급공사에서의 하도급계약 체결방식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 따라서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각자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대표사가 공동도급사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시공위탁을 한 건설업자이므로 공동도급사 각자 단독명의로 별개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하도급법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하도급계약을 연명으로 체결하였거나 대표사가 공동수급업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자의 지분비율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각 공동수급

업체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하도급법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각자의 지분비율을 명백히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서로 연대하여 하도급대금지급의무 등의 하도급법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 2. 전자적인 형태의 서류보존도 인정되는지?

**Q** 전자적인 형태의 서류보존도 인정되는지 여부

**A** 하도급법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컴퓨터 등 전자적 형태의 거래가 발전함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된 서류도 인정(시행령 제3조제1항)하고 있다. 다만, 기록사항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의 사실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에 응하여 디스플레이화면 또는 서면으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하고 수급사업자의 명칭 등 기록사항의 검색이 가능해야 한다.

## 3. 발주처통보용과 실제 하도급계약서상 어느 것이 유효한지 여부

**Q** ○○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인 “을”은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을 하도급 계약금액이라 주장하고, 원사업자인 “갑”은 위 하도급계약서는 발주자에게 통지하기 위한 허위계약서로서 실제로는 공사약정서상의 계약금액이 유효한 계약금액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하도급대금은 공사약정서상의 계약금액에 맞게 지급되었으나 세금

계산서나 입금증은 하도급계약서상의 금액으로 발행되었을 경우, 하도급법 적용 시 기준이 되는 계약 금액은 어느 것인지?

**A** 원칙적으로 계약은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그 합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면을 작성·교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상이한 계약서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합의내용에 입각한 계약서가 유효한 하도급계약서로 인정 된다.

실제 시공과 관련하여 작성되지 않고 다른 목적(예컨대, 저가하도급심사를 피하기 위하여 발주자 통보용으로 작성)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합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하도급거래 당사자 간에는 허위표시로 무효라 할 것이다.

## 4. 보존할 서류의 종류와 기간의 여부

**Q** 보존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언제까지 보존해야 하는지?

**A**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래가 종료된 날(건설공사의 경우 공사 완공일)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3년간 보존해야 할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제조나 건설위탁 시 교부한 일정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와 목적물의 물품수령서, 목적물의 검사결과, 검사종료일이 기록된 검사보고서, 하도급대금 지급일, 지급금액, 지급수단 등이 기록된 서류 등이 해당된다. ◉